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어디까지 왔나

“사문화된 법 안된다” 법안 마무리 한창

여성계 서명운동 열기 바탕으로 기구확대, 공청회 등 모색



92년부터 시작된 가정폭력방지법 입법화가 곧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계는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도 살해사건만 4건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정폭력문제와 관련해 방지법 마련을 위한 여성계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이미 여성계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0까지 서울을 비롯, 전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된 '성폭력 추방주간'에서 가정폭력방지법 입법을 위한 거리서명운동을 벌여 2만명 이상의 지지자를 확보한 상태. 특히 한국여성의전화(회장 신혜수)는 가정폭력의 실상을 담은 슬라이드를 제작하는 한편 내년 1월 경에는 최종 시안을 확정하는 한편 현재 여성의 전화 지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폭력방지법 추진을 위한 전국연대'를 확대해 시민, 사회단체를 망라하는 추진기구를 추진한다는 세부계획까지 세워 놓고 있다.

여성계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지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눈길을 끄는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법의 처벌은 다 받았다”

첫번째 사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충격적으로' 보여준 일가족 아버지 살해 암매장 사건.

지난 9월 8일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평소 술을 마시고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김홍복(40. 무직) 씨를 10대인 자녀 3남매가 가스충으로 질식사시킨 후 벡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밤늦게 돌아온 어머니 박모(37) 씨와 함께 사체를 뒷산에 매장한 사실이 지난 11월 30일 밝혀진 것. 아직 판결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번 사건을 접한 여성계는 '제2의 김성복사건'이라며 폭력적이

고 권위주의적인 아버지를 방치한 결과가 낳은 비극적인 사건이라 입을 모았다.

두번째 사례는 가정폭력과 관련해 재판부의 의식 변화를 담은 판례. 지난 11월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강원구 부장판사)는 3월 25일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4년을 선고받은 김명희 씨에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법의 처벌은 받을 만큼 받았고 더 이상의 심판은 하늘에 맡길 일”이라며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김 씨를 석방했다. 김 씨는 결혼 후

18년 동안 남편의 폭행과 성적학대에 시달리던 끝에 남편을 살해하고 말았다.

이 판결을 접한 한국여성연대는 전향적이며 바람직한 결과라고 논평한 뒤 그러나 “김 씨의 경우도 남편의

가정폭력방지법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제기했다.

현재 마련중인 (가칭)가정폭력방지법의 주요 골자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교육이나 관계구축 등 1차적인 예방을 뒷받침하는 조항과 폭력 발생시 초기단계에서의 피난처와 치료제공 등 2차적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서비스 조직을 통한 피난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는 것은 물론 가정보호처분에 있어서도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명령, 가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에의 위탁명령, 임시퇴거명령, 임시치권명령, 임시부양명령, 금전배상명령, 교육명령·사회봉사명령 등의 기타 명령을 규정하고 있고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가정보호처분 전담부 및 전담판사 설치까지 규정하고 있는 등 폭력발생 초기단계에서의 개입과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체계까지 포괄하고 있어 이법

시안 초기개입, 재발방지 조항 구체적

가족공동체 해체 통한

가정폭력 해결은 지양돼야

폭력이 자행되고 있던 당시 이웃의 신고로 출동했던 의경이 ‘가정사로 생각해 그냥 돌아갔다’는 증언이 주효하게 반영돼 나타난 결과”라며 “가정폭력에 대한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우리의 현실은 또다시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될 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이 확정돼 실질적으로 집행될 경우 단일법안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찬진 변호사는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법률제정이 단지 ‘가정내에서’ 확대받는 노인이나 아내 또는 어린이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 국한해서는 안되며 본질적인 보호법익은 사회의

기본단위로서의 가정의 평화와 안정성을 국가가 보장하는데 두어야 한다”며 몇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지적된 부분은 가족구성원의 범위.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규정하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인 친족, 친형제 관계는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전제한 후 법률상 배우자 및 전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자 및 종전 관계자, 양당사자간에 친생관계가 추정되는 등 법률상 직계비속 관계가 인정되는 자녀를 둔 3자 상호간(아동, 노인학대를 포함하는 범위), 부부의 일방과 직계비속 관계인 자녀가 있는 경우의 3자 상호간(계모, 계부의 문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입법시 ‘아내학대’ 문제와 함께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문제도 동일한 비중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 이와 함께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정보호’라는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입각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도 주요하게 지적됐다.

특히 이 변호사는 “사회복지적 대책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양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등 ‘가족공동체 해체를 통한 가정폭력 해결’이라는 나쁜 결과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기존의 실정법과는 다른 특수한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여성계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움직임을 보였던 국회여성

정책연구포럼(회장 주양자)의 경우 지난 10월 23일 ‘가정폭력의 실상과 그 입법론’을 주제로 진행한 토론회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어 ‘일회적인 관심’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토론회 당시 여성계에는 개최소식을 알리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의견수렴절차를 소홀히 해 최근 충선을 앞두고 밀어붙이기식 입법추진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신한국당의 ‘(가칭)여성발전기본법’과 같이 성과위주로 호를 위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책임은 국가

그러나 여성계는 서둘러서 좋을 일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여성연대의 정춘숙 인권부장은 “지난 13년간 우리를 가장 안타깝게 했던 점은 ‘피해자 대책이 없다’는 것이었다”면서 “사문화된 법이 아닌 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이라 전했다. 정 부장은 또 “여성사회참여 10대 과제에도 드러나듯 정부의 복지정책이 사회적 약자는 외면하고 다분히 여성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에만 집중되는 것 같다”면서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즉 근본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는 가정폭력방지법이 지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입법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손정미 기자)